

#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	-----

제출연월일 : 2003. 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세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체납액 징수기동팀』의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에게 위임한 시세 부과·징수사무중 세목별 고지서 1매 기준 7백만원 이상인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나. 시장이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시세 징수교부금은 구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세조례 제10조 및 제19조

나. 조직 및 예산부서 합의 : 합의하였음

- 체납액 징수기동팀 근무자는 증원 및 구 세무부서직원 파견 조치
- 소요예산은 2003년 정리추경에 반영

다. 기 타

(1)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입법예고 : 2003. 9. 9 ~ 2003. 9. 19 / 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중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7백만원 (가산금을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은 시장이 징수한다. 다만,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된 시세와, 부과한 당해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 계류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임사무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 關係法令 拔萃文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징수교부율)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현행 대전광역시세조례】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는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 3. 10 조례 제2928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세 신고납부부분의 부과징수 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9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월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시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월말일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 심 사 보 고 서

2003년 10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9월 29일 조신형 의원외 5인
2. 회 부 일 자 : 2003년 9월 29일
3. 상 정 일 자 : 제1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3.10.6)  
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조신형 의원

#### 1. 제안이유

- 가.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 나.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2조)

##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손성도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Ⅳ. 토 론 요 지 생 략

## Ⅴ. 질의답변요지 생 략